

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FAQ

< '24.1.25., 한국보육진흥원 >

- Q. **현직 보육교사**입니다.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**장기미종사자 교육**을 이수해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가능한가요?
- A. 인정되지 않습니다. 보육교사 보수교육과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교육의 목적,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**현직 보육교직원인 경우, 아래 직무교육 표를 참고하여 직무교육을 이수**하시기 바랍니다.

(2024 보육사업안내 p.223 참고)

구분	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	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
교육 대상	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2년이 경과한 자	만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*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(체용이전)까지 교육을 받아야함
교육 목적	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 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	장기 미종사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현장 조기 적응 지원
교육 내용	3영역/ 40시간 - 인성소양(8시간), 건강안전(8시간), 전문지식, 기술(24시간)	3영역/ 40시간 - 인성소양(8시간), 건강안전(4시간), 전문지식, 기술(28시간)
교육 방법	집합교육 원칙	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*
비고	매 3년 마다	이수하고자 하는 자

* 현 보수교육은 직접 대면 교육이 원칙이나, **농어촌지역 및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수급이 어려운 보육교직원**을 위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'24년에 보육사업안내 개정